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0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정을호·김동아·강선우

서삼석 · 김문수 · 조승래

백승아 • 박용갑 • 이훈기

전용기 • 윤호중 • 김태년

김영진 • 윤후덕 • 전진숙

이학영 • 박정현 • 홍기워

강준현 • 안태준 • 백혜련

의원(2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.2%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%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, 59.9%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.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,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학생 기숙사비 납부 및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)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에 대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에 따 른 납부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.

- 1. 현금
-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
- 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비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는 학생 기숙사비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(이하 "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1. 학생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

- 2. 학생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
- 3. 학생 기숙사비 관련 불만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학생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,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의2(학생 기숙사비 납부 및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)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에 대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1. 현금 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 ②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학생이 원하는 경우 제1항에따른 기숙사비를 교육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 ③ 학교는 학생 기숙사비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"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한다. 1. 학생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

入	ŀ	힝
---	---	---

- 2. 학생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
- 3. 학생 기숙사비 관련 불만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학생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기숙사비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,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학생기숙사비심의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<u>제11조의3</u>(평가 등) (현행 제11조 의2와 같음)

<u>제11조의4(교육통계조사</u> 등) (현 행 제11조의3과 같음)

<u>제11조의2(평가 등)(생</u>략)

<u>제11조의3</u>(교육통계조사 등) (생략)